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8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제네바 제3협약」 제4조(전체)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

□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자를 “군인”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국군포로”라 함은 <u>대한민국 군인으로서</u>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 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 -- <u>국군의 구성원으로서</u> ----- ----- ----- ----- ----- ----- -----.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신분이 아닌 군무원¹⁾ 등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1) 군무원은 비군인 공무원 신분으로써, 군대에서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경우는 국군포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등록 국군포로 현황(2025. 8월 기준)2]

(단위: 명)

연도	'94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24	계
인원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	80

자료: 국방부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범주를 ‘군인’에서 군인 이외의 군무원 등을 포함하는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여와 희생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임.

[등록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 현황]

구 분	산정기준	지급액*
보 수	60세까지 산정	약 100만원 (병장 기준)
위로지원금	일시지원금 (초기 정착 지원금)	약 2.47억원
	월지원금 (생활 지원금)	약 월 617만원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제공	보증금 약 4,000만원 월세 약 48만원(실비)
유족지원금	귀환포로 사망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지원비	병원 진료비 및 처방약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연 1,500만원 한도

자료: 국방부('25년 3등급 병 출신 국군포로 기준)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2025년 8월말 현재 총 80명(사망 72명, 생존 8명)이 국군포로로 등록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등록실적이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³⁾가 2017년에 발표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자(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⁴⁾ 규모가 10만 명 내외로 추산⁵⁾되고 있음.

이들 중 일부는 군속⁶⁾ 등의 직책을 가지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6·25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전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기여와 희생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공무원 전시납북자 현황]

구 분	일반공무원	경찰	교도관	군속 등	합계
인원(명)	2,843	1,386	247	832	5,308

자료: 국방부

□ 그런데 이들 전시납북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생활하면서 북한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납북자의 경우 오지로 추방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함(「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2017.) 12p 또는 84p

6) 군무원으로 변경(1980.12.31.)되기 전의 명칭임. 1980년 12월 31일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군조직법」도 군속이라는 명칭이 군무원으로 개정됨.

남한의 일부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험·취업·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⁷⁾ 이들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음.

□ 비록, 납북 당시가 전쟁 중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북자들이 발생하였고,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규라 할 수 있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8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로 하여금 국군의 구성원에 대한 실태파악과 국내송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군포로의 범주를 ‘군인’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여와 희생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조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나. (생략)
다.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라.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바 (생략)

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2017.) 330p

또한 현재 「국군조직법」 제16조⁸⁾에 따라 국군조직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이 포함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4조⁹⁾에 따라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간 정합성 측면에서도 국군포로에 군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다만, 현재 군에는 군인 및 군무원 이외에도 교육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등 다양한 신분¹⁰⁾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어 국군의 구성원이라는 법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적용 대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동 법문을 수정하는 방안¹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시 납북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¹²⁾. 따라서 군인을 제외하고 전쟁 중에 납북된 군속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8)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9)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교육공무원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방대학교 교수를 예로 들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로는 청소원, 조리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11) 예시)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이하 생략)

12) 제20대국회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5인)[2011363]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전시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7인)[2200917]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투 및 작전 수행, 군사훈련, 지휘 및 통솔, 부대 관리 등 군사적인 핵심 임무를 맡는 군인과 군의 행정, 기술, 연구, 정비, 의료 등 비전투 분야에서 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군무원 간에는 참전 중인 전쟁, 전투 등에 대한 기여도 측면, 전투, 훈련 등에 따른 고위험성 측면 및 임무수행시 생명의 담보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또한 군무원을 국군포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군무원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시납북된 일반공무원, 경찰, 교도관 등 타 직종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방부는 6·25 전쟁 시 북한에 억류된 군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국군의 구성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현재 다양한 신분의 근로자가 군에 근무(군인과 군무원 외에 공무원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하고 있어 국군 포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국군의 구성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률이 없는바 「국군조직법」만을 근거로 하여 군무원 신분의 포로를 포함 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행법은 공무원, 경찰, 교도관 등 다른 납북 공무원을 국군포로로 인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군무원만을 국군포로 인정 시, 다른 남북 공
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1. 「제네바 제3협약」 제4조(전체)

제4조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나.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 (2)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다. 역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라.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선장, 수로 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의 자들도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로 대우되어야 한다

가. 피 점령국의 군대에 소속하는 또는 소속하고 있던 자로서, 특히 그러한 자가 그들이 소속하는 교전중에 있는 군대에 복귀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또는 역류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전기의 소속을 이유로 하여 점령국이 그들을 역류함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동 점령국이 본래 그가 점령하는 영토 외에서 적대 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해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문한다.

나. 본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접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억류함을 요하는 자. 단, 이들 국가가 부여하기를 원하는 더욱 유리한 대우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30조제5항, 제58조 내지 제67조, 제92조 및 제126조와 충돌 당사국과 관계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익보호국에 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전기의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속하는 충돌 당사국은 이들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익 보호국의 임무를 행함이 허용된다. 단, 이들 충돌 당사국이 외교상 및 영사 업무상의 관행 및 조약에 따라 통상 행하는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

3. 본 조는 본 협약의 제33조에 규정하는 의무직 및 군목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